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이용안내

(중앙조달-조달청 평가대행 수의계약 적합성평가)

2026. 10. 19.

1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선정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입찰공고 정보, 평가방법, 평가위원 추천 등 양식 작성하여 제출

② **(접수)** 서비스 대상 여부 등 **신청서 검토, 접수/반려 처리**

③ **(교섭)** **평가위원시스템에서 교섭 요청서 작성**

- 평가일시, 평가방법, 평가위원 직무 분류, 위원 수 등

④ **(선정)** **평가위원 교섭 후 처리결과**를 수요기관에게 안내(카카오톡)

⑤ **(평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서 평가위원 등록, 평가 집행**

⑥ **(사후처리)** 수요기관은 **평가위원 참석여부 등 사후평가*, 평가수당 지급** 후 시스템을 통해 **평가완료 통보**

* 평가위원 불참 외 공정성·성실성·전문성 위반이 있을 경우([붙임3] 참조) 공문으로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에 통보(평가위원 불참에 대한 사후평가는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처리)

** **평가수당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에 따라 지급([붙임1] 참조))**

⑦ **(완료)** 평가완료 처리

2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수요기관 사용자 신청 방법

1)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에서(https://nego.g2b.go.kr) 수요기관 사용자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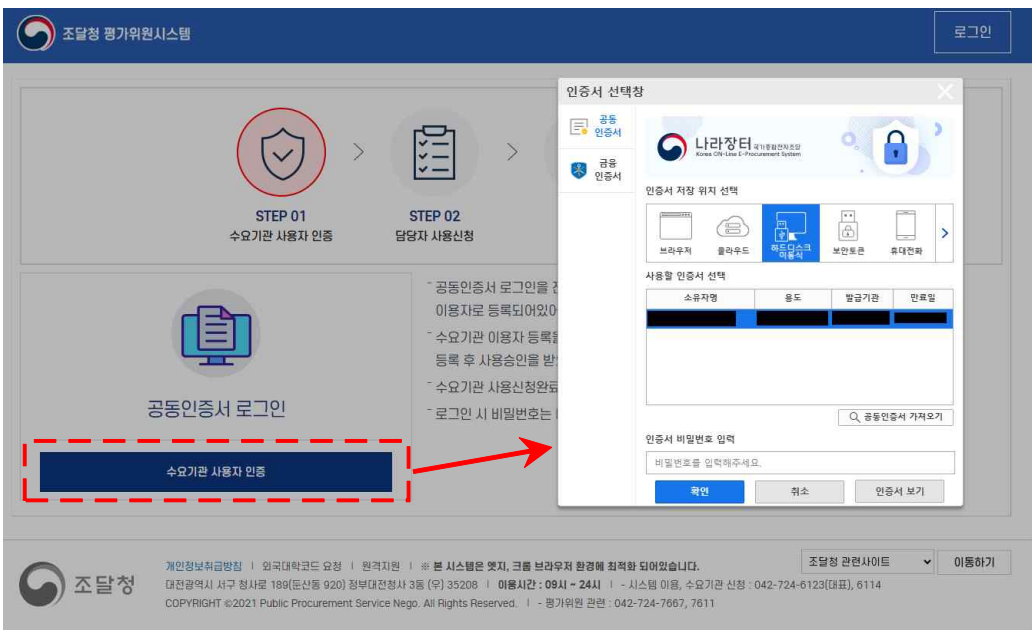
- **수요기관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



2) 수요기관 **인증서 로그인**(나라장터 사용자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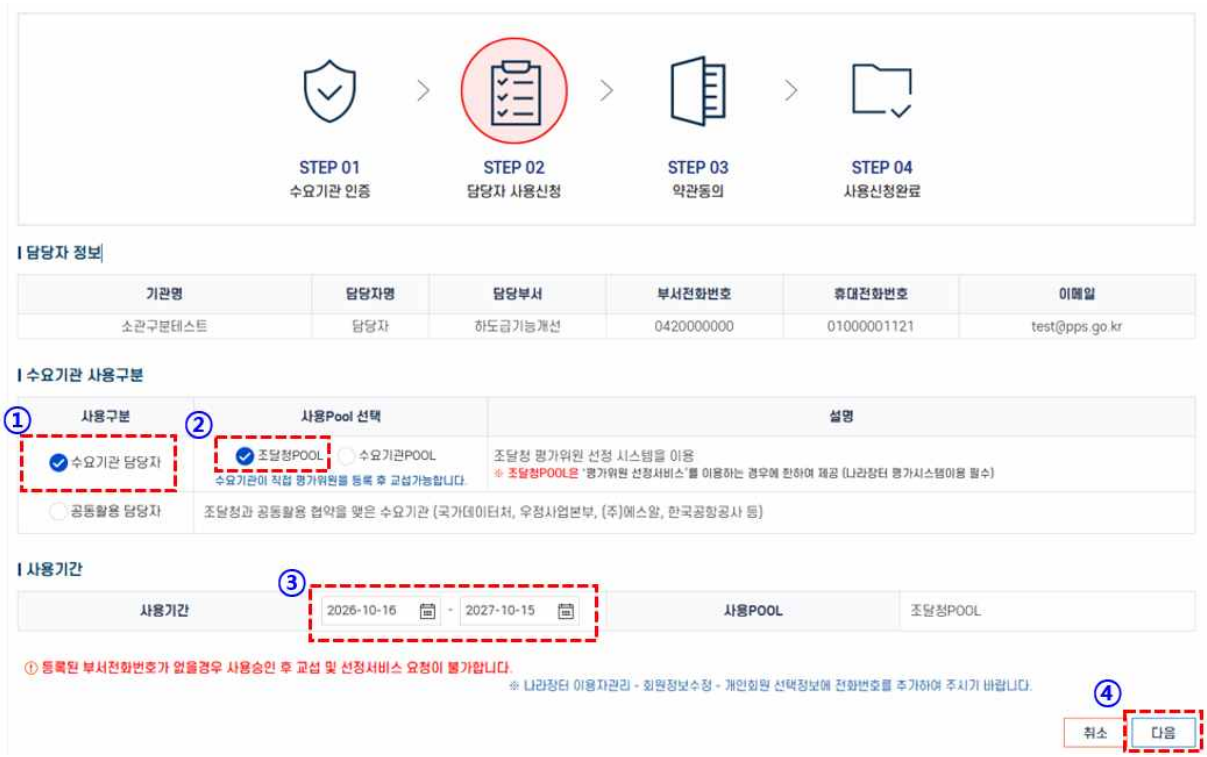
① **수요기관 사용자 인증** 버튼을 클릭 → ② **인증서 로그인**(나라장터 사용자인증서)

※ 수요기관 사용신청 전, 반드시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이 필요



3) '수요기관 사용자 구분 선택' 내용 입력

① **사용자구분**(**수요기관 담당자**) 선택 → ② **사용Pool**(**조달청POOL**) 선택 → ③ **사용기간**(최대 1년) 선택 → ④ **다음** 버튼을 클릭



4)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준수사항 반드시 숙지)

①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 ② **조달청 평가위원 이용 의무사항 준수 서약** 체크 → ③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 평가위원 선정 및 사후처리

1.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요청, 선정취소, 평가집행, 참석처리, 수당지급 등 집행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2. 평가 후 평가위원의 참석유무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상에서 처리)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등의 문제 발생 시 관리규정 제13조(평가위원 사후평가) 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문처리)

※ 평가위원 수당지급기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수당지급)에 따라 평가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요시간, 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집행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비밀엄수의 의무 ([붙임2] 참고)

1. 평가위원의 선정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 시 취득한 평가위원의 정보는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합관리규정 (별지 6)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함을 서약한다.



5) 사용신청완료

① 사용POOL 및 사용기간, 선택한 사용자 구분 확인 → ② 사용신청 버튼 클릭

③ 사용신청 후,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으로 공문 시행을 하셔야 승인완료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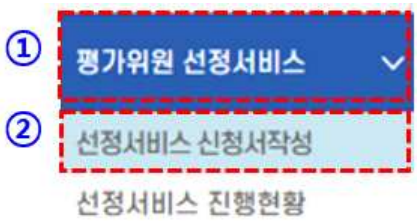
※ 신청 사유를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로 기재하고 기타 양식 내용 무방

※ 공문 미시행 시 사용신청 반려처리

3 평가위원 선정서비스(중앙조달-조달청 평가대행 수의계약 적합성평가) 이용 방법

□ 시스템 이용방법

1) 평가위원시스템(https://nego.g2b.go.kr)에서 로그인 후 화면 좌측에서 '①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메뉴 클릭한 다음 '②선정서비스 신청서작성' 메뉴 클릭



2)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진행 단계[1)]



- 빨간색 점선 : 선정서비스를 신청하는 **수요기관 신청자의 진행 단계**
- 파란색 점선 : 신청된 선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조달청 처리자의 진행 단계**

< 진행 단계별 설명 >

- **STEP 01 작성중** :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한 상태
- **STEP 02 신청** :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
- **STEP 03 접수** : **처리자**가 서비스를 접수한 상태
- **STEP 04 교섭진행중** : **처리자**가 교섭 진행 중인 상태
- **STEP 05 선정통보** : 교섭 완료 후 **신청자**에게 교섭결과를 통보한 상태, **신청자**는 평가를 집행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후평가 등록/평가수당 지급
- **STEP 06 평가완료** : **신청자**가 평가 완료 처리한 상태
- **STEP 07 완료** : **처리자**가 최종 완료 처리한 상태

1) 조달청 처리자는 8단계(작성중→신청→접수→교섭진행중→교섭결과→교섭결과통보→평가완료)로 진행

《STEP 01 작성중》 평가위원 선정신청서 작성

ㅇ 중앙조달요청(조달청 평가대행) 후 재공고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적합성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①평가위원 선정서비스 > **선정서비스 신청서작성** 클릭

②**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확인사항**을 모두 체크(**조달방식을 "중앙조달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로 반드시 체크**)

③**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확인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평가시스템 이용여부**를 체크한 공고임을 확인합니다.**(오프라인 평가 불가)**
√ 평가위원자격, 선정방식 등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참석결과, 사후평가 등의 처리가 필수임을 확인합니다.
√ 조달청 **조달요청** 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평가대행** 건임을 확인합니다.
√ 평가수당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의 [주]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함을 확인한다. ([주] 3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시 평가위원 수당은 지급기준의 80%를 지급)

①**입찰공고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입찰공고번호 등록

(팝업창에서 ②**입찰공고정보 검색(공고구분: 중앙조달) -> ③입찰공고번호 선택** 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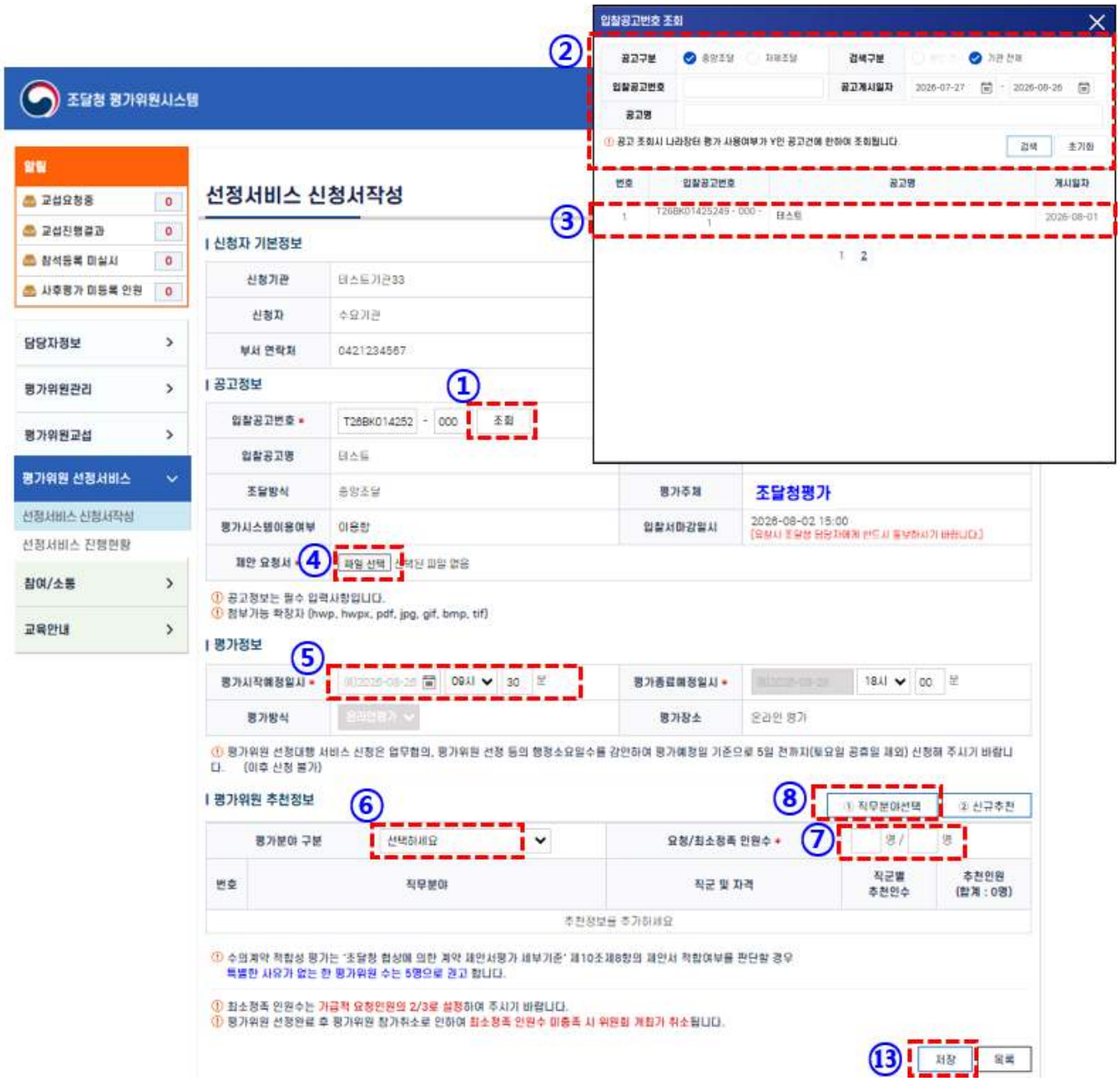
④**제안요청서 파일선택 버튼 클릭**하여 제안요청서 등록

⑤**평가시작예정일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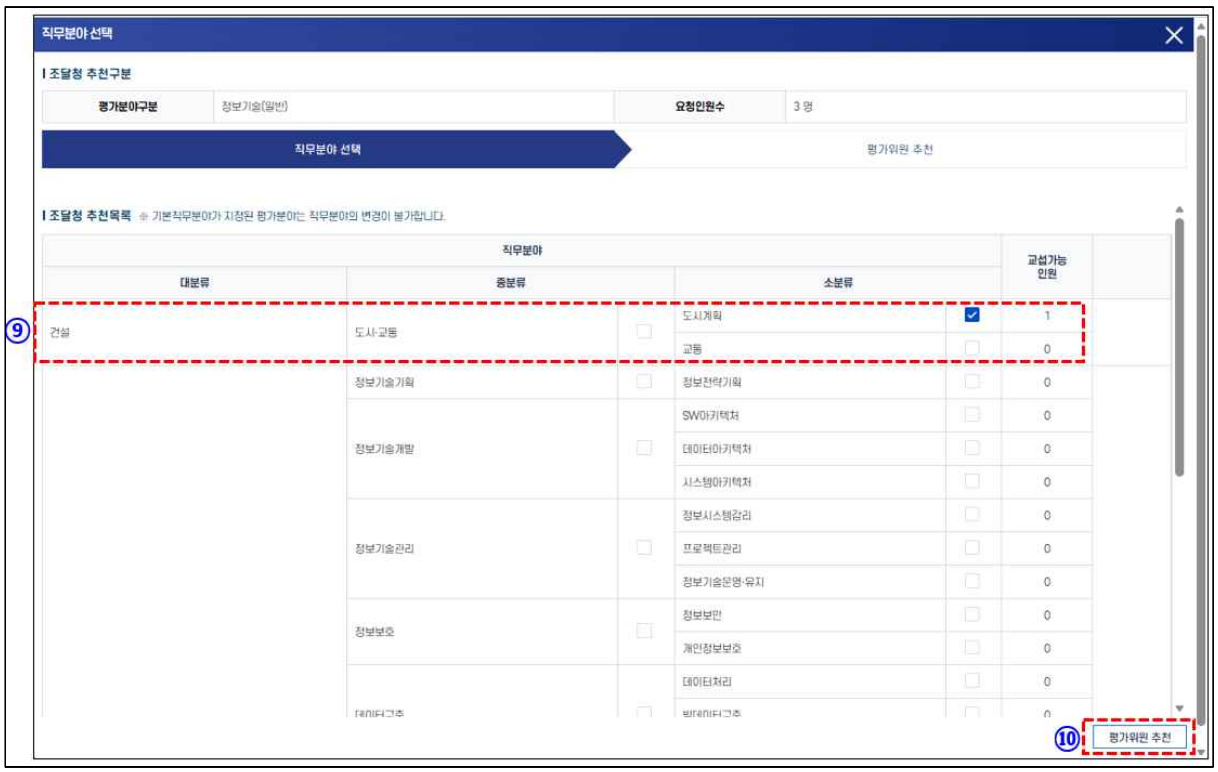
⑥**평가분야 구분** 선택

⑦**요청/최소정족 인원수**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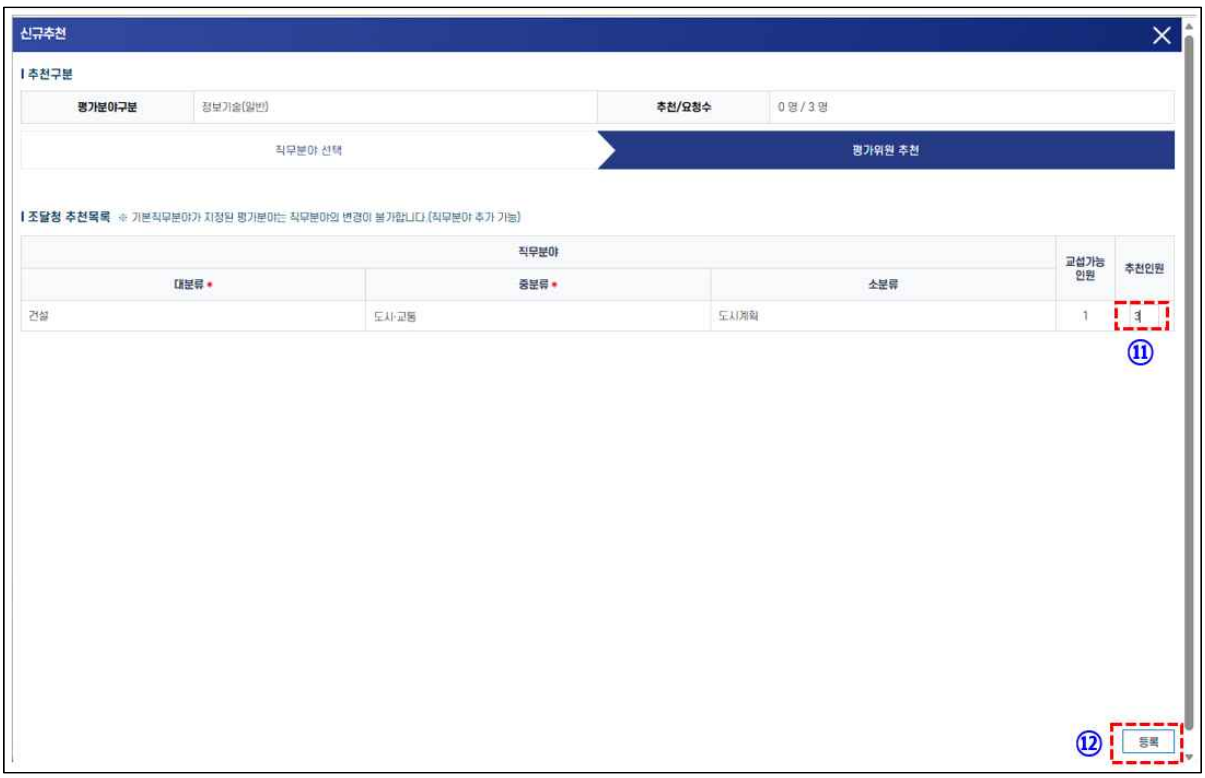
⑧**직무분야선택** 버튼을 클릭



팝업창에서 희망 **⑨직무분야를** 선택 후 **⑩평가위원 추천** 클릭



팝업창에서 **⑪추천인원** 입력 후 **⑫등록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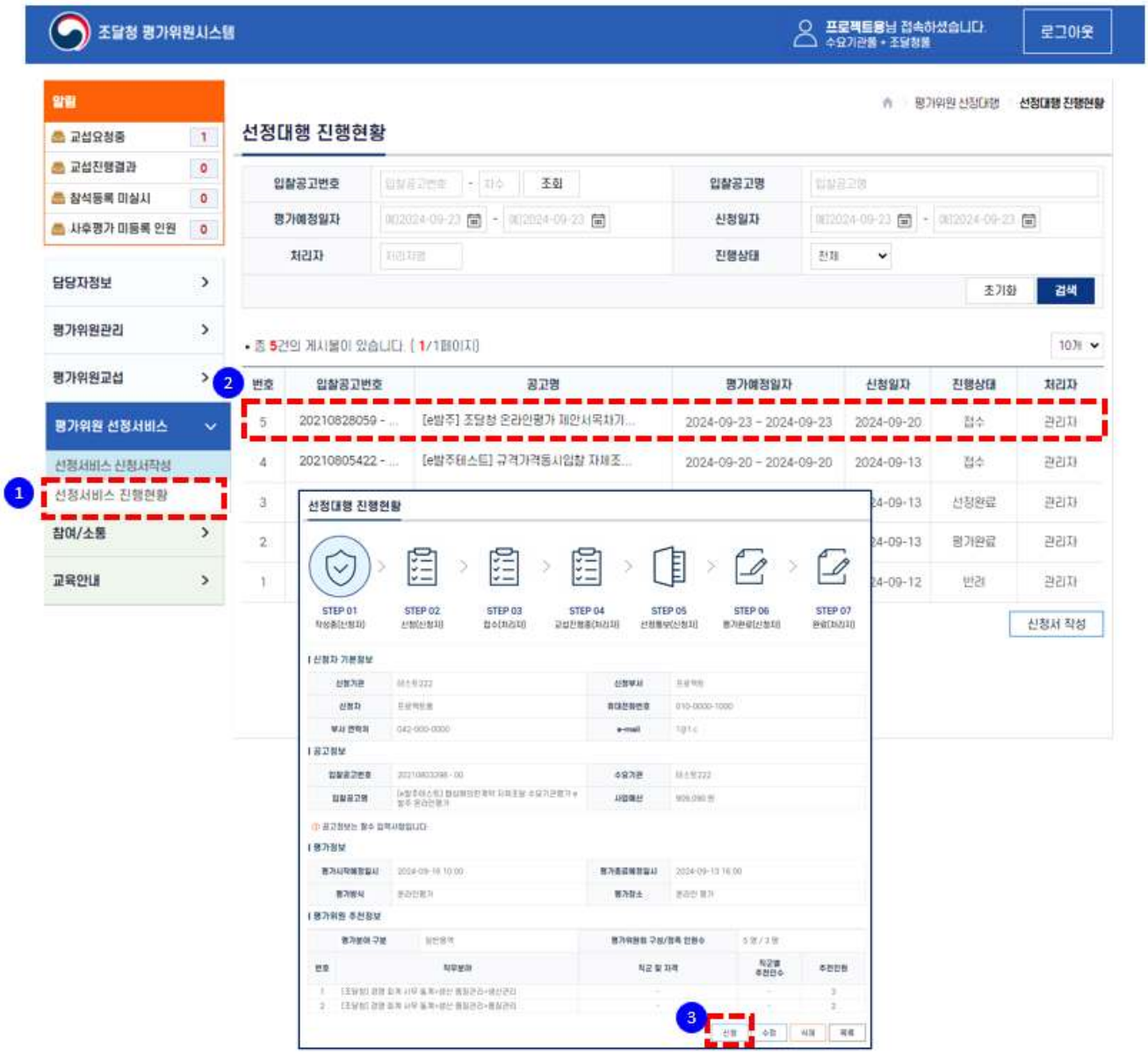
'선정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⑬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저장**

《STEP 02 신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신청

①평가위원 선정서비스 > **선정서비스 진행현황** 클릭

②작성한 **신청정보 클릭**

③최종적으로 검토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STEP 03 접수》 조달청 처리자 접수

- **조달청 처리자의 진행 단계 -** 수요기관이 신청한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STEP 04 교섭진행중》 조달청 처리자 평가위원 교섭진행

- **조달청 처리자의 진행 단계 –** 평가위원 **교섭을 진행**

《STEP 05 선정통보》 평가위원 선정완료 및 결과통보, 신청자 평가집행(나라장터), 사후평가 등록/평가수당 지급

평가위원이 선정완료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된다.





교섭진행현황에서 교섭요청번호와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정보를 알 수 있다.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에 교섭요청번호 연계등록을 다음과 같이 진행**(평가시작 30분전부터 가능)**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매뉴얼: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제목옆에 "평가" 입력 후 검색>게시물번호 53번)

-평가위원시스템 교섭진행현황에서 **①교섭요청번호**를 복사한다.

-나라장터 로그인>입찰>조달평가>평가목록>해당평가 클릭> 평가위원 및 참여자 화면에서 복사한 교섭요청번호를 **②평가위원 선정요청번호**에 붙여넣은 후 **③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위원정보 목록에 선정된 평가위원 정보가 조회가 된다. 평가위원정보를 확인한 후 **④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나라장터에서 평가진행 후 **바로 평가수당 보고서 및 필요한 평가위원정보를 백업**하고 **평가확정**한다.
(특히, 평가수당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백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평가수당 지급이 곤란할 수 있음)

(나라장터에서 **평가확정 후 당일 23시에 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모두 파기됨!!**)

수요기관에서 평가수당을 직접 이체처리완료한 다음,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평가참석 결과등록 및 사후평가를 처리한다.

-평가위원의 **⑤평가 참석유무**(참석, 불참) 확인 후 **⑨평가수당 지급확인**을 체크한 다음 **⑩평가완료**를 클릭하여 평가완료 처리
(**불참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⑤평가 참석유무**(참석, 불참)에 **'불참'** 표시 → 사후평가의 **⑥평가** 버튼을 클릭 → 사후평가등록 팝업화면에 해당항목에 **⑦체크** → **⑧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가 입력된다. 이후 **⑨평가수당 지급확인**을 체크한 다음 **⑩평가완료**를 클릭하여 해당 평가 건의 평가완료 처리)

-**불참 외의 사유로 사후평가**을 하는 경우 **공문**으로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에 통보**([붙임3] 참조, "사후평가표 참고"** 문구를 클릭하면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STEP 06 평가완료》 신청자가 사후평가, 평가수당 지급을 완료하고 **평가 완료 처리한 상태**

《STEP 07 완료》 선정서비스 최종 완료 처리

- **조달청 처리자의 처리 단계 –** 서비스 최종 완료 처리

[붙임 1]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7])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평가시간			
		2시간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 수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오프라인 평가	기본 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가산금	■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 온라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해당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평가시간 구간의 수당을 지급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간 구간별 평가위원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각 위원이 속하는 구간으로 지급한다.

[주]

1. 위와 같이 산출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한다.

2.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기술능력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권역기준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강원권 : 강원도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경상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전라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제10조 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의 80%를 평가위원에게 지급한다.

[붙임 2] 보안서약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부서에 근무하면서 평가위원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별표 3])

평가위원 사후평가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 평 가 일 시 :
○ 평가위원명:

□ 평가사항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평가 집행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평가대상자와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점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평가대상자에게 해당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하는 경우 등	50점	□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유기재)	50점	□
		경미한 위반	▪ 본인의 평가점수를 평가장소에서 공개하는 경우 등	30점	□
			▪ 특정 평가대상자의 오류 등을 지속 부각시키는 등 타 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 온라인평가 중에 평가집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 회의 및 전화하거나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30점	□
	성실성	심각한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에 선정된 후 평가집행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평가에 불참한 경우	50점	□
			▪ 검토의견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검토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평가에 참가한 경우(평가전일까지 공모안 열람기록이 없는 경우 등)	50점	□
			▪ 온라인평가 중에 정당한 사유(사전신고, 정전 등) 없이 10분 이상 시스템과 접속이 끊기거나, 평가집행자의 모니터에 평가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30점	□
			▪ 평가시간 중에 평가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 평가시간 중에 평가와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30점	□
			▪ (설계공모)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에 선정된 후 사전답사에 불참한 경우 (예비위원 포함)	30점	□
		경미한	▪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에 선정된 후 교섭당일 18시	20점	□

		위반	이후 부터 평가시작 시간까지 평가집행자에게 불참을 통보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시작시간을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 20분 이상 지각 시 해당 건 평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20점	□
			▪ 온라인평가 중에 정당한 사유(사전신고, 정전 등) 없이 5분 이상 10분 미만 시스템과 접속이 끊기거나, 평가집행자의 모니터에 평가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10점	□
			▪ 온라인평가 시 해당 평가위원의 자료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 제출까지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	10점	□
			▪ 그 밖에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유기재)	10점	□
수요기관	전문성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0점	□
			▪ 제안내용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에 소극적인 경우	20점	□
			▪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평가대상자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유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20점	□
			▪ 그 밖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유기재)	20점	□

□ 점수부여사유

평가집행자 : (서명)

수요기관 담당자 : (서명)

주1) 조달청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성실성을 사후평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사후평가한다. 전문성 평가는 수요기관이 평가 당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2) “성실성” 위반사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사고 등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평가위원은 이에 대한 소명서를 평가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3) 평가위원별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매 50점마다 1년간 교섭·선정을 정지하여야 하며, 교섭 정지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이 아닌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는 삭제한다.

주4) 사후평가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해촉한다.